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22.7)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과 국정 과제 추진계획 등을 반영하여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범위 추가(안 제6조 개정)

스마트건설 관련 산·학·연·관 참여 법적기구 구성을 위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범위에 법 제10조의 2에 따른 융·복합 건설기술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스마트건설기술에 대한 정책심의 및 의견수렴 기능을 부여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1항제1호의 “제6조제4호”를 “제6조제5호”로 하고 제9조1항제2호의 “제6조제5호”를 “제6조제6호”로 한다.

제15조3항제1호의 “제6조제5호”를 “제6조제6호”로 한다.

제17조8항의 “제6조제5호”를 “제6조제6호”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생략)</p> <p><u><신 설></u></p> <p>2. ~ 9. (생략)</p>	<p>제6조(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법 제10조의2에 따른 융·복합 건설기술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u></p> <p>3. ~ 10. (현행 제2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p>
<p>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p> <p>① (생략)</p> <p>1. 기준정비분과위원회: <u>제6조 제4호</u>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p> <p>2. 설계심의분과위원회: <u>제6조 제5호</u>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p>	<p>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p> <p>① (현행과 같음)</p> <p>1. ----- <u>제6조 제5호</u> ----- ----- -----</p> <p>2. ----- <u>제6조 제6호</u>----- ----- -----</p>

원회”는 “지방심의위원회”로,
제9조제7항 및 제15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시·
도지사”로, 제15조제3항 중
“제6조제5호나목·라목·마목
·사목 및 아목”은 “제17조제
2항제2호나목·라목·마목·
사목 및 아목”으로 본다.

“제6조제6호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4994